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무 의원 (대표) 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814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5일

발 의 자 : 김종무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이태성, 노승재, 이광성, 문병훈,  
이정인, 김경우, 이상훈, 이병도,  
고병국, 박상구, 신정호 의원 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재건축·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켜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익금을 급여, 임대료 등의 조합 운용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조합원의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함
- 현행 법령상, 조합해산 시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정비사업 완료 후 해산총회 미 개최 시 벌칙조항이 없어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음
-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조합해산 준비를 추가하고 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조합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청이 미해산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비조합이 적정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에 등기 절차, 청산금 등의 징수,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일정 등을 추가함(안 제22조)
- 나. 이전고시의 보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의 권고 조항을 신설함(안 제24조의2)
- 다.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등기 절차, 청산금 등의 징수, 조합해산 준비 업무 등을 추가함(안 제75조)
- 라. 추진위원회 및 조합장이 제출해야할 자료의 범위에 등기 절차, 청산금 등의 징수,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8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및 시행령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과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의 권고 등) ① 시장은 이전고시의 보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으로, 법 제41조제5항 단서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매년 이전고시의 보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그 청산 및 해산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제7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과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,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

제86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3.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과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
4.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제75조(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)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“그 밖에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 | <p><u>출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75조(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) 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과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,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86조(자료의 제출)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(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| <p>제86조(자료의 제출)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과 등기 절차,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</u></p> <p>5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4. <u>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  |
|----|---|
|    | <p><u>부칙</u><br/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|